

제19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6.25)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종호]

목 차

-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6.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6.13

2. 개정이유

- 안전관리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 의지에 부응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부서장의 사무를 분장·조정(안 제3조)
 - 행정과 → 재난관리과
 -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과 → 재난관리과
 -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 재난관리과 → 건설교통과
 - 하천에 관한 사항
 - 재난관리과 사무신설
 - 안전관리, 재난 대응 총괄조정, 재난현장지휘소 운영, 자치단체 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등

나. 부서 명칭변경(안 제3조)

- 건설교통과 → 건설과 ○ 재난관리과 → 안전총괄과

다. 부서 직제순위 조정(안 제3조)

- 재난관리과 13위 → 7위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 보건진료원 → 보건진료소장(안 제9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3.06.04. ~ 06.1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 의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서 ‘행정과’의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건설교통과’로 이관하고 재난관리과의 하천에 관리 업무는 건설교통과로,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업무는 재난관리과로 이관토록 하였으며,

- **부서명칭을** ‘건설교통과’는 ‘건설과’로, ‘재난관리과’는 ‘안전총괄과’로 변경하여 ‘재난관리과’ 부서 직제순위를 13위에서 7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2조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6.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6. 13

2.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 총액인건비 정원 증원, 사회복지인력 확충, 기능직 일반직 전환과 퇴직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정원의 총수 증원(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655명(현행) → 658명(증 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41명(현행) → 644명(증 3명)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5명(본청 3, 의회1, 사업소 1명)
 - 기능직 : 감 2명(본청 1, 의회 1명)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 나. 예산조치 : 연 95백여만원(2014년 본예산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 라. 입법예고(2012.10.29. ~ 11.1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5명이 증가되고 기능직의 경우 2명이 감소되는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